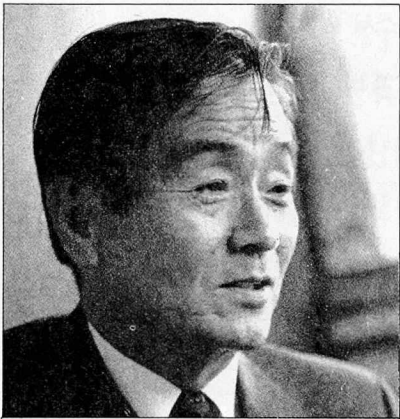


횡설수설 몇가지

한해를 보내면서 생각나는 이런저런 일들

韓萬年
—潮閣 사장



韓萬年씨

서두에

글을 쓰라고 한다. 그것도 많이. 처음에는 送年隨想이라 하기에 반송낙 비슷하게 어물어물하였는데, 나중에 청탁서를 펴보니 30매를 쓰라는데 놀라서 거절을 하였다. 몇분의 썬야 한다는 데모를 만나서 ‘항복’한 셈이 되었다. 무엇보다 써서 이 압력에서 벗어 나가야 하는가, 청탁서에는 “87년 출판계의 회고와 현안문제, 한해를 보내는 개인적인 소감 등을 수필체로 써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다.

1. 등록법 개정 始末

87년을 회고하면서 제일 먼저 다뤄야 할 것이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 파동’이다. 이 파동은 출판계로서는 언급하기도, 논평하기도 어처구니 없는 진기한 내용이었다. 문공위원회에서는 입안, 제출, 심의, 통과 등의 절차가 양식있는 公人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始末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도 법사위원회에 회부되기 직전인가, 회부되고 난 후엔가 세상에 알려졌고, 입법 기술적으로 회기내의 審議미결로 자동폐기 시킴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공인으로서의 체면을 간신히 유지했다고나 할까. 처음 내가 이 소식을—이 초안의 내용을—들었을 때에는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었다. 열풍이 불 때이고, 기본권의 각종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생각과 행동을 떠나없이 모두가 열망할 때였으니까. 그런데 말로 전해 듣고는 믿어지지 아니해서 초안의 카피를 얻어서 본 후에야,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 각계의 반대운동이 奏效하여—법안의 내용이 워낙

고약했다고나 할까—결국은 폐기된 것이다. 후일담과 이에 따르는 모범답안을 구해야 하겠다. 신문 기사를 보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굉장하시군요. 법안을 폐기시키셨으니깐요”했다. 내용을 아는 독자는 이런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2. ‘대통령’과 나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인 때에 이 글을 쓰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나라 출판의 장래가「출판사 등록법 개정안」시비 하나만 갖고 볼 때 앞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것은 나와 우리나라 몇 출판인들이 1972년 파리에서의 IPA(국제출판인협회) 총회 때 겪은 일을 생각하면 남의 나라 권력의 중추에 있는 사람들의 출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는 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그때 여러가지 모임이 저녁마다 있었는데, 그 하나가 프랑스 대통령의 초대였다. 하기가 한국어 간 우리는 자국이고 타국이고간에 ‘대통령’ 이름으로 된 초대장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어서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 초대장은 아마 ‘教師 출신인 나는, 출판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에 전세계로부터 파리에 모인 출판인 여러분을 엘리제 궁으로 초대합니다……’인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전 처음으로 자·타국간에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해보았던 것이다. 그 자리에 모인 세계에서 온 출판인들의 좋아하는 모습과 함께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巧妙함에 새삼 생각을 깊이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후일 내가 파리에 다시 갔을 때, 풍피두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이름을 딴 풍피두 기념관을 한바퀴 돌면서, 그의 대한 추억과 출판을 잘 아는 위정자의 생각 등등을 곰곰이 해보았다.

이 이야기에도 후일담이 있다. 유신 전 내가 잘 아는 재일교포 한 분은 이따금 서울에 오면, 우리나라 정계·재계의 상류사람들과 만난 것을 곧잘 화제에 올려 자랑을 했다. 한번은, 내가 ‘대통령’이라고 칭호가 붙은 사람은 프랑스의 풍피두 대통령 한사람만 만나보았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놀라서 당신네 같은 사람을 왜 우리 대통령이 그냥

유신 전, 내가 잘 아는

재일교포 한 분에게

프랑스에서 엘리제궁의 초대로

풍피두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놀라서,

당신같은 사람이 왜 우리 대통령이

그냥 놔두느냐고 하기에,

풍피두처럼 우리 대통령도

교사 출신이지만

아마도 출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어선가 보다고

받아넘긴 일이 있다.

놔두느냐고 하기에, “글쎄, 하기가 우리 대통령도 교사 출신이지만, 출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만 옆에 두고 있나 보다”고 받아넘긴 일이 있었다.

‘출판사 등록법 개정 시비’는 대통령 선거 공고 훨씬 전인데도 그 모양이었는데, 지금의 선거전—우선 되고 보겠다는 열기와, 또 선거후에 예측되는 걱정거리를 생각하면, 우리들 출판인들은 당분간 정치를 너무 믿지 말고 허리띠끈을 단단히 죄어야 하겠다.

3. 책 파는 일

나는 우리나라 출판사로서는 서점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유통절차가 정비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출판사의 힘이나 능력대로 책을 외상으로 서점에 주고, 독자에게 팔리고 나면 그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예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도매기구는 그동안 외국의 예—특히 일본의 예—를 참고로 하여 여러가지로 연구를 했고, 모임도 가졌었다. 공사금리가 비쌀 때에는 정부의 힘도 빌어서 장기 저리의 기금이 마련되면, 돈의 힘으로 하면 무엇인가 전망이 보일 것 같았지만, ‘취잡는 고양이에게 쥐들이 모여서 그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같아서, 이것도 그리 쉽지 아니했다. 한때,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만큼, 정부·여당이

열을 올릴 때도 있었으나, 이것도 옛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서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키워주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지만, 무질서에 가까운 출판사와 서점간의 거래방식과, 외형노출을 꺼리는 양 당사자간의 利害의 완전일치로 이것도 물거품이 아닌가 싶다. 서점이 전문화되지, 서점의 고객유치에 좀 더 애를 써주었으면 하는 것이 출판사의 부탁이라면, 서점은 외상으로 앉아서 책을 공급받는데도 도매율을 투정한다는 것이 출판사의 님두리가 된다.

서점의 전시 공간이 문제가 되는데, 당장 전시 공간을 넓힐 수가 없으면 전시 방법을 바꾸는 노력도 기대되었는데, 꿈쩍도 아니한다. 30년 전에 일본에 가보았더니, 서점의 한 모퉁이에 출판사 단위의 전시도 해 놓은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 서점은 아무리 대형서점이라도 아직 이런 시도가 보이지 아니함은 매우 섭섭한 노릇이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讀書人」이라는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는 소규모 서점 주인이 아침부터 밤까지 서점 앞에 손님의 시간대별 흐름에 맞추어서 책의 진열을 바꾸어 매상을 더 올린다는 것이었다.

또 출판사간의 실력이랄까. 판매고의 격차가 미처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는 것도, 전체 유통문제를 생각할 때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으로 출판물의 판매에는 0세율이 적용되었고, 서점의 정가판매제도가 확립된 것이 이 제도가 가져온 출판계의 제일 큰 수확이었다. 이 정가판매제도가 확립되면서 유통문제가 정립되는 起爆劑가 되려나 했던 것이 그렇지 못해서 아쉽기만 하다.

출판업이나 서점경영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87년에는 생명보험업계의 유력회사가 서울의 대형서점 개업에서 비롯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서점 체인을 구축하려 했던 일도 금년에 있었던 일이다.

신문사들도 정기간행물을 비롯하여 월부도서, 일반도서 등 잡다하고, 광범위의

출판을 시작하여 위세를 떨치고 있어서 업계내의 마찰을 빚고 있다. 민주화의 물결과 영업의 자유라는 말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면과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유통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다양한 도서의 종류와 이에 못지 아니한 독자의 욕구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이제는 뜻 맞는 출판사끼리의 친목과 단체 행동에서 일보전진이 있어서 공동 배본과 공동 수금까지도 생각해볼 전망이 있을 법하다.

4. 평균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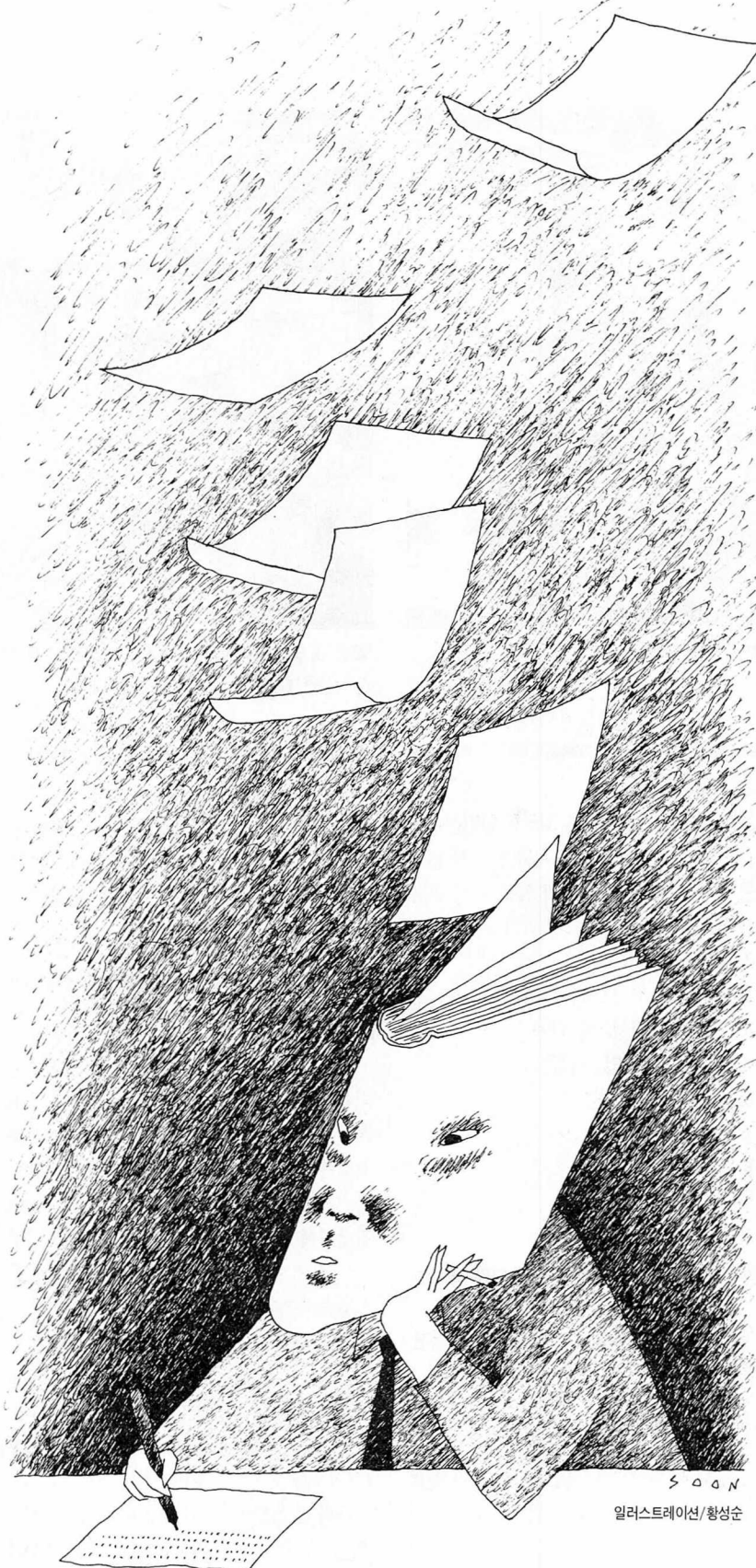
환도 후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별 평균수명을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 그때의 기억으로 해방전의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한 기록을 보고 몹시 놀란 일이 있었다. 요즘은 간혹 신문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 평균수명도 선진국형이 되어가서, 70세에 육박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이렇듯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독서인구도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출판사의 평균수명도 생각해보아야 하겠다. 영국의 출판업자 연원의 「출판개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출판사의 '유아사망률'이 대단히 높다는 경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행정권의 개입으로 출판사 등록이 쉬웠다, 어려웠다하는 나라에서는 출판사의 유아사망률이랄까, 평균수명이라 할까가 통계조차, 아니 생각조차하기 어렵다. 출판사의 산아제한이란 정책이었으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전부터는 출판사 사장이나 편집책임자도 출판물의 내용에 따라서 구속되어 법정에서 서게 되고, 유죄판결도 받게 되었다. 출판사의 평균수명도 중요하겠지만, 출판계로서도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출판업자의 권익옹호라는 점에서도 대처해야 할 일이다.

5. 저작권·국제 저작권

국내외의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출판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에 따르는 정당한 댓가를



5 0 0 N
일러스트레이션/황성순

지불한다는 것이 되겠다. 책의 제조가에서 저작권에 대한 댓가의 지불만큼 비중이 크고 까다로운 것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이 외국저작권에 대한 댓가의 지불로도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출판사의 부담이 마음가짐에서부터 실제 사무까지 범위와 일거리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기가, 모든 가산되는 원가는 정가에 반영시키면 된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산술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외국저작권의 중개를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도 많고, 또 국내 저작권을 외국에 팔겠다고 나서는 분들에게서 연락도 오고 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서 慣行이랄까, 선례가 수립된 것이 없어서 망설이는 단계라 하겠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사고 파는 데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거래조건이 금전으로만 표시해서 성립되었는가에서부터 누가 어떻게 번역하며, 어느 출판사에서 어떻게 출판이 되는가가 국제저작권의 거래에서는 심각하게 따지는 첫번째의—금전으로 표시되기보다 더 비중이 높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출판이란 금전상의 거래조건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서, 이런저런 일을 따지다보면 失機와 실수도 할 수 있겠다. 적정거래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의 사용료를 정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일반 공산품에서와 같이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서부터 지불방법, 지불시기 등 알아두고 따져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사들이는 쪽이 많은 출판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파는 쪽도 만만치 아니한 출판사도 있겠는데, 미개척, 미지의 영역이니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거리가 금년부터 생기게 된 것이다.

끝으로

이제 그만 써야 하겠다. 내일부터는 일이 있어서 나가다녀야 하겠고, 마감날짜도 되었다. 다 쓴 치약을 연필을 굴려서 한번 더 써야 할 분량을 짜내는 격이 되었고, 제목도 '횡설수설' 몇가지로 하여 책임이나 면하려 한다.